

# 핸디캡위원회규정

제정 1995. 3.28.

개정 2020. 9.24.

## 제1장 명 칭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46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핸디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0. 9.24.>

## 제2장 목 적

**제2조(목적)** 위원회는 회원골프장에 대한 공정한 코스레이팅을 실시하고, 핸디캡제도를 제정, 보급, 교육하여 전국적인 골프 플레이어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른 공평하고 균형 있는 핸디캡조정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장 구 성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24.>

**제4조(위촉)**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 1명은 회장이 협회 상근부회장 또는 처장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0. 9.24.>

**제5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 처리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4장 회 의

**제6조(소집)** 회의는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5장 업 무

제8조(사업) 위원회는 제2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골프장 골프 플레이어의 핸디캡 조정의 규칙 제정(Handicapping)
2. 회원골프장의 코스레이팅(Course Rating) 산정에 관한 사업
3. 협회 등록된 플레이어의 핸디캡 조정
4. 기타 핸디캡에 관련된 사업

제9조(세칙) 전 조 사업을 수행키 위한 코스레이팅 및 핸디캡사정 규칙에 대한 세칙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6장 부 칙

제10조(경과) 본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시행) 본 규정은 서기 199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